

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은행업 감독규정 <별표 6>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제20호 중 “(다만 해당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)”를 “(다만, 기타지역 소재 주택(오피스텔 포함) 구입과 관련된 취급요건은 2025년 6월 1일까지 유효하다)”로 한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별표 6>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</p> <p>20. (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)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,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. <u>(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.)</u></p> <p>가. "전세사기 피해자 등"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(오피스텔 등 포함) 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%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, 경·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. 다만 담보대출금액</p>	<p><별표 6>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</p> <p>20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(다만 기타지역 소재 주택(오피스텔 포함) 구입과 관련된 취급요건은 2025년 6월 1일까지 유효하다.)</u>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

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나. 가목에 따라 "전세사기 피해자 등"에 대해 주택(오피스텔 등 포함)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(DTI)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.

다. 가목에 따라 "전세사기 피해자 등"에 대해 주택(오피스텔 등 포함)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. 다만, "전세사기 피해자 등"에 대한 주택(오피스텔 등 포함)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.

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(현행과 같음)